	가 정 통 신 문 -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이해-	-교 훈- 공 경(恭 敬) 성 실(誠 實) 협 동(協 同)
조종중학교	소통과 성장 그리고 꿈이 있어 행복한 학교	제2021-62호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이해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제 25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 훈령 제365호」**를 근거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 및 관리하고 있으며, 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상	항목	2020	2021	개정 사유
훈령	제4조	•(제4조)교사가 직접 관찰, 평가한 내용기재	•변경 없음	•학생부 대필 금지원칙 신설
	제15조	•(제15조)중학교 '교과', '과목', •'원점수/과목평균', '성취도(수강자수)'	•변경 없음	•학생의 서열화 정보에 해당하는 '표준편차' 삭제
	별표9	•수행평가: 과제형 수행평가 금지	•변경 없음	•학부모·사교육 개입 여지 최소화 및 학생의 평가 부담 완화
기재 요령 (공통)	작성 시 유의사항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원점수, 석차, 석차등급, 백분위) - 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 학회 등 발표사실 모두 금지 -도서명, 출판사명과 관계없이 출간 사실 자체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출원 또는 등록 사실 모두 기재 금지	•기재 금지사항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원점수, 석차, 석차등급, 백분위 등 성적 관련 내용 일체) **-교내대회 참여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실적** -자격증 명칭 및 취득사실 ※ 이 외 항목은 2020학년도와 동일	•사교육 유발 요인이 있는 사항의 기재 금지 지침 구체화
	기재요령안내	•학생부는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되,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활용 가능	·학생부는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을 근거로 입력하되,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 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는 활용 가능 **※ (변경사항) 수행평가 결과물 → 수업산출물 (수행평가 결과물 포함)**	•학생부 대필 기준 제시
	출결상황	•출석인정 사례추가 - 경찰청관서의 선도프로그램 •학생선수의 출석인정 결석 일수 - (초)20일, (중) 30일, (고) 40일 ※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	•학생선수의 출석인정 결석 일수-(중)15일 ※ 학교장이 승인할 경우 •장기결석 기준 마련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7**일 (2021 조종중학교)**	•학생선수 출석인정 허용 기간 변경 •장기결석 기준 마련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가해학생 조치사항 입력 유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 제1호~ 제3호의 조치사항 이행 시 •입력 유보 후 - 동일학교급에서 다른학교폭력으로 조치받을 경우 → 입력 유보한 조치사항까지 포함하여 모두 기재	•가해학생 조치사항 입력 유보-변경 없음 입력 유보 후 -동일 학교급에서 다른 학교폭력으로 조치받은 경우 → 입력 유보한 조치사항까지 모두 기재 ※조치 학년도가 서로 다른 경우, 추가 조치를 받은 학년도에 기재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적 해결 지원
기재 요령 (중,고)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자율탐구활동을 기재할 경우 필요한 조건 ① 정규교육과정 이수과정 ② 사교육 개입 없어야 ③ 학교 내에서 학생 주도로 수행 ④ 증빙자료 보관 (학교교육계획서, 내부결재, 학생활동 산출물)	•자율탐구활동: 다음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학생의 특기사항만을 기재 **(학생활동 산출물 실적 기재 불가)** ① 정규교육과정 이수과정 ② 사교육 개입 없어야 ③ 학교 내에서 학생 주도로 수행 ④ 증빙 자료 보관 (학교교육계획서,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문서,** 학생활동 산출물 등)	•자율탐구활동의 기재 가능 범위와 용어 정비

2.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할 수 없는 내용

가. 각종 공인 어학 시험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나. 교과·비교과 관련 교외대회 참여 사실과 그 성적 및 수상 실적
 * 학교장의 참가 허락을 받아 참여한 각종 교외대회에서의 수상실적도 기재 불가함.
다. 교외 기관·단체(장)등에게 수상한 교외상(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등도 기재 불가함)
라. 교내·외 인증시험 참여 사실이나 그 성적
마. (고등학교 관련 내용으로 생략)
바. 논문을 학회지 등에 투고 또는 등재하거나 학회 등에서 발표한 사실
사. 도서 출간 사실
아.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또는 등록 사실
자. 어학연수, 봉사활동 등 해외 활동 실적 및 관련 내용
차.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 암시 내용
카. 장학생· 장학금 관련 내용
타.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 상호명, 강사명 - 교육 관련 기관의 경우 기관명을 입력할 수 있음.

3. 학교생활기록부 기록과 관련한 위법행위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 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0. 각 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제6조(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 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교사에게 학교생활기록부의 부당한 기재 및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행위입니다.
★ 학교생활기록부는 교사가 관찰한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학생으로부터 기재할 내용을 제출받아 기재하는 '셀프 학교생활기록부'는 위법행위입니다.

2021년 06월 02일

조 종 중 학 교 장